

서울서부지방법원 2022. 8. 12 선고 2021가단250257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제이엘 담당변호사 이지훈

피 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늘품 담당변호사 천성훈, 류우현

변 론 종 결 2022. 6. 24.

판 결 선 고 2022. 8. 1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와 C 사이에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1/2지분에 관하여 2021. 7. 28.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1/2지분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등기국 2021. 7. 29. 접수 제11125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채권

원고는 2019. 4. 25. C에게 1억 4,500만 원을 변제기 1년으로 정하여 대출해주었는데, C는 위 대출원리금 채무의 변제를 연체하고 있다.

나. C의 이혼 및 부동산 증여

1) 피고와 C는 1995. 12. 23. 혼인하여 슬하에 D과 E 남매를 두었다. 그런데, 피고는 2021. 5. 10. C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고(서울가정법원 2021드단119721), 위 법원의 2021. 7. 21.자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됨에 따라(2021. 8. 11.) 피고와 C는 이혼하였다.

2) 이 사건 부동산은 본래 피고와 C가 2006. 3. 27.부터 각 1/2지분을 소유하면서 자녀들과 함께 살던 집인데, C는 피고와 이혼하면서 피고에게 2021. 7. 28. 자신 소유 이 사건 부동산의 1/2지분을 증여하고, 다음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이 사건 부동산의 현황

1) 증여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은 시가가 약 2억 2,000만 원이었는데, 2013. 5. 16.자로 피고를 채무자로 하여 F은행의 채권최고액 8,250만 원(대출 잔액 6,000만 원)의 근저당권등기가 마쳐져있었다.

2) 또한 이 사건 부동산 전체에 마쳐진 위 F은행의 근저당권과 별도로, 이 사건 부동산의 C 지분에 관하여 C를 채무자로 한, ① 2021. 3. 8.자 G은행의 청구금액 46,179,892원의 가압류등기, ② 2021. 5. 17.자 H의 청구금액 6,999,289원의 가압류등기, ③ 2019. 10. 21.자 I의 채권최고액

2,25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있었다.

3) 피고는 C의 지분을 증여받으면서 C를 대신하여 위 ①, ②, ③ 관련 C의 채무를 모두 변제하고, 위 가압류등기와 근저당권등기를 모두 말소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3,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C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1/2지분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이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C에게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성격에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 성격이 가미된 제도임에 비추어,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이혼을 함에 있어 자신의 배우자에게 재산분할로 일정한 재산을 양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로 되어도, 위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규정의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될 것은 아니나, 상당한 정도를 벗어난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사해행위로서 취소의 대상으로 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위와 같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에게 있다(대법원 2000. 7. 28. 선고 2000다14101 판결,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5다74900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C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자신의 지분을 증여한 것은 피고와 이혼하면서 재산분할의 일환으로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앞서 채용한 증거와 갑 제5 내지 7호증,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와 C의 혼인기간이 25년이 넘고, 그 기간 동안 피고는 가사와 자녀들의 양육을 전담한 점, 이혼 및 증여로 피고는 자신을 채무자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F은행의 근저당채무(6,000만 원)를 모두 떠맡게 된 점, 더욱이 C의 지분을 이전받으면서 7,000만 원을 들여 C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고, C 지분에 설정된 가압류등기와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모두 말소한 점,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피고가 C로부터 재산분할 및 위자료로 지급받는 돈은 C가 공무원 퇴직 후 수령하는 돈 중 5,000만 원과 월 150만 원의 공무원연금액인 점 등에 비추어 C 명의의 다른 재산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1) C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1/2지분을 증여한 것이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상당한 정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C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1/2지분을 증여한 것이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판사 허명욱

별지

1) C는 이 사건 부동산의 1/2지분을 소유한 외에, 자신의 명의로 상주시 J 임야 41,653㎡의 1/4지분 및 K 대 387㎡를 소유하고있다(합계액 사해행위시 기준 47,591,975원, 현재 시점 기준 52,686,075원). 이에 대해 원고는 위 J토지는 종종 소유라고 주장하고, 피고는 C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재산분할대상 재산에 위 토지들을 포함시키지 않았다.